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8개 품목 HS 변경 -

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 시행일: 2022년 12월 28일
-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1	NIKKALYCO AS-100 등 3건	제3505.10-9000호	제3824.99-9090호
2	LCD Module	제8512.20-2000호	제8524.91-5000호
3	Strut Mount Assy등 3건	제8302.30-0000호	제8708.80-0000호
4	TactSuit등 3건	제8543.70-9090호	제9504.50-9000호
5	LED 등기구 등 2건	제9405.10-3000호	제9405.42-0000호
6	Mixed feed for bovine 등 21건	제2309.90-1010호 제2309.90-1020호 제2309.90-1040호	제2309.90-1099호
7	Video Recorder Eyewear	제9004.10-9000호	제8525.89-1000호
8	INVERTER 등 4건	제8537.10-2000호	제8504.40-9099호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NIKKALYCO AS-100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Modified starch(Anti-offset spray powder (Nikkalyco AS-100))	Modified starch (NIKKALYCO AS-100)	Modified starch; NIKKALYCO AS-100 JAPAN
종전공문	분석47260-2241 (1996.12.26)	분석47260-10746 (1998.12.02)	품목분류과-106320 (2006.01.09)
물품설명	인쇄면에 살포하여 인쇄용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사용하는 백색분말로 전분 표면이 실리콘 수지로 코팅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3505.10-9000호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3824.99-909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사유	실리콘 수지의 특성인 분산성 등을 이용하여 인쇄용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만든 조제품이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LCD Module ; LUM1041B		
종전공문	품목분류과-104100(2005.05.12)		
물품설명	차량 계기판(instrument cluster)에 부착되어 속도나 연비, 주행거리, 주유 경고등과 같은 운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액정디바이스(LCD)를 통해 표시해 주는 세그먼트 방식의 디스플레이 모듈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8512.20-2000호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8524.91-5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문자나 숫자, 그림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액정디바이스(LCD)를 이용해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이므로, 제8524.91-5000호의 '액정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3. Strut Mount Assy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FRT STRUT (UPPER PLATE); 54610-2M000	Strut Mount Assy	쇼바 MOUNT(54610-22000) ; 액센트
종전공문	품목분류1과-1351 (2011.10.05)	품목분류1과-1122 (2013.05.22)	품목분류1과-1257 (2016.06.02)
물품설명	차량의 쇼크 업소버(Shock-absorber) 끝 부분에 결합되어 차체에 쇼크 업소버를 체결함과 동시에 차량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8302.30-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8708.80-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변경사유	체결을 위한 비금속(非金屬) 장착구 기능 외에, 차량의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도 하며, 쇼크 업소버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708.80-0000호의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4. TactSuit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Tactot(BHTTT0000)	Tactosy(BHTTS5401)	TactSuit(Tactosy+Tactot)
종전공문	품목분류3과-351 (2018.01.22.)	품목분류3과-352 (2018.01.22.)	품목분류3과-353 (2018.01.22.)
물품설명	몸에 착용하는 조끼(방직용 섬유) 형태의 전자기기로, 내부에는 진동을 만들어 주는 모터(16개)와 제어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8543.70-909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9504.50-9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주로 비디오 게임용 기기에 연결되어 게임을 보다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즐기기 위한 의도로 만든 게임기의 부속품이므로 제9504.50-9000호에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5. LED 등기구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LIGHTING FIXTURE; LSL4A6B22RM/K	LED 등기구; LSL18A3B22RM/K
종전공문	품목분류3과-1771(2014.8.8.)	품목분류3과-1616(2014.7.17.)
물품설명	조명 커버와 알루미늄 하우징이 결합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로, 주로 상품 진열장 등의 모서리에 여러 개를 모듈식으로 연결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9405.10-3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9405.42-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변경사유	휴대나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의 조명기구이므로 천장벽용의 조명기구로 한정할 수 없어 제9405.42-0000호의 '그 밖의 전기식의 조명기구'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6. Mixed feed for bovine 등 21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Mixed feeds for pigs; Triple-Fer
종전공문	품목분류2과-8648(2017.8.3.)
물품설명	소나 돼지, 닭, 어류 등의 성장촉진, 소화 활성화 등을 위해 당밀이나 탄산칼슘, 산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각종 미네랄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특수용 배합사료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2309.90-1010호 (기본세율 4.2%)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2309.90-1099호 (기본세율 5%)
변경사유	여러 축종에 사용이 가능한 특수용의 배합사료이므로 제2309.90-1099호의 '그 밖의 배합사료'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Mixed feeds for pigs; Triple-Fer 외 20개 품목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참조

7. Video Recorder Eyewe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Video Recorder Eyewear ; durango
종전공문	품목분류1과-1204(2013.06.05.)
물품설명	선글라스(안경)에 디지털 카메라가 결합되어 있는 웨어러블(wearable)한 형태의 전자기기로, 촬영한 사진 등은 저장하거나 유무선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 가능함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9004.10-9000호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8525.89-1000호 (기본세율 무세)
변경사유	설계의도 등을 고려시 선글라스 기능보다는 ‘디지털 카메라’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형태에 부합되므로 제8525.89-1000호로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8. INVERT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INVERTER
종전공문	품목분류3과-3925(2016.09.12)
물품설명	전류와 주파수 등을 변환하여 모터 등을 제어하는 기기로 전기접촉기, 축전기, PCB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8537.10-2000호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8504.40-9099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모터제어 등 특정목적에 맞게 전류나 주파수 등을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능에 따라 제8504.40-9099호의 변환기로 분류(제69차 WCO HS위원회 결정사항)

* INVERTER 외 3개 품목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참조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2022-60호)

[붙임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전문(관세청고시 제2022-60호)

I Contact



김성근 관세사
T 070-4353-5152
E skkim2@esein.co.kr



안성호 관세사
T 070-4353-1529
E shahn@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